

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육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(안)

심 사 보 고 서

2006. 2.

행 정 위 원 회

1. 審 査 經 過.

가. 제출일자및 제출자 : 2006년 2월 3일 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06년 2월 17일 회부

다. 상정일자 : 2006년 2월 20일

제11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상정의결

2. 提 案 說 明 的 要 旨 (제안설명자 행정국장 정진)

가. 제정이유

- 교육경쟁력 강화가 지역발전의 척도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구민의 다양한 교육욕구 수용 및 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한 구민 복리증진 도모하고,
- 교육환경개선 및 인재양성을 위해 민·관·학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교육발전 전략을 강구함으로써 지역교육발전 도모하기 위해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기능(안 제2조)
 - 협의회는 다음 사항의 협의·조정 및 사업추진을 지원한다.
 - .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 제안
 - . 학교환경개선 지원에 대한 자문
 - . 우수 학교 육성·유치에 관한 사항
 - .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
 - .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여론 수렴 및 구민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
 - . 기타 영등포구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구성(안 제3조, 안 제5조)
 - 총회와 운영위원회(실무위원회)로 운영
 - 교육발전협의회(총회) : 40인 이내로 구성

- .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며 부의장은 협의회에서 선출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장 겸임
- . 유관기관의 장 및 교육계 원로 중 약간 명을 고문으로 추대 가능
- . 위원은 교육계, 사회단체, 학부모 등 교육에 식견 있는 인사와 시의원, 구의원, 교육위원으로 구성하여 구청장이 위촉
- 운영위원회 : 10인 이내로 구성
 - . 위원장 : 교육발전협의회 부의장
 - . 총 무 : 운영위원회에서 호선
- 운영
 - 위원의 임기 (안 제4조)
 - . 임 기 : 2년, 연임가능.
 - . 보궐위원 : 위원 결원시 위촉가능,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
 - 협의회 개최 (안 제6조)
 - . 총 회 : 연2회, 필요시 의장이 임시회 소집
 - . 운영위원회 : 분기 1회, 필요시 임시회 개최
 - 위원의 해촉 (안 제10조)
 - . 직능 및 기관단체에서의 당해 직위 상실한 때
 - .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 장기출장 등으로 임무 수행이 어려운 때
 - . 기타 협의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- 실비보상 (안 제12조)
 - . 협의회 활동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 가능

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5호 및 제15조
- 예산조치 : 2006년 추경 예산안 편성시 실비보상등 필요경비 편성
- 합 의 : 필요없음
- 입법예고(2006. 1.19 ~ 2006. 1.31) 결과 : 의견없음

3.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 (專門委員 김찬재)

- 본 조례안 제정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예시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가목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사항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5조(조례)에서 찾을 수 있으며,

- 본 조례안의 체계 및 내용을 살펴본바, 입법형식에 부합되고, 조문 상호간 상충되는 내용이 없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.
- 개별조문을 검토한바, 안 제8조(고문)중 “약간 명”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은 인원의 제한을 둘 수도 있다고 사료되며, 안제12조에서 “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”의 보상규정을 두었는바, 본 위원회가 집행기능을 갖지 않는 임의적 자문기구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,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“활동 및 운영에 따른” 경비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修正案 要旨

가. 수정요지

- 안 제12조 실비보상 등에서 본 위원회는 집행기능을 갖지 않는 임의적 자문기구의 성격을 갖고 있어,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에 따른 경비로 수정

나. 수정 주요골자

- 안 제12조 “본 협의회 활동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”를 “본 협의회 활동 및 운영에 따른 경비”로 수정함.

5. 審査結果 : 修正案 可決